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관

인가	1999. 6. 02
변경인가	2000. 4. 06
변경인가	2001. 3. 31
변경인가	2002. 5. 07
변경인가	2002. 6. 21
변경인가	2003. 4. 14
변경인가	2004. 4. 22
변경인가	2005. 5. 18
변경인가	2006. 3. 24
변경인가	2007. 4. 20
변경인가	2008. 4. 08
변경인가	2008.12. 04
변경인가	2009. 4. 03
변경인가	2010. 3. 08
변경인가	2010. 7. 30
변경인가	2010.11. 10
변경인가	2012. 1. 04
변경인가	2012. 4. 12
변경인가	2012. 9. 09
변경인가	2013. 4. 03
변경인가	2014. 4. 02
변경인가	2014.12. 04
변경인가	2015. 4. 20
변경인가	2015. 6. 16
변경인가	2017. 4. 5
변경인가	2018. 9. 12
변경인가	2018.12. 28
변경인가	2019. 6. 20
변경인가	2020. 4.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16]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약호 HUG)”으로 표기한다.

[본조개정 2015. 6.16]

제3조 (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개정 2015. 6.16>

② 공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6.16>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본조신설 2015. 6.16]

제5조 (광고방법) 공사의 광고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hug.or.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서울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개정 2004.4.22, 2012.1.4., 2012. 4.12., 2015. 6.16>

제6조 (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3., 2015. 6.16>

제7조 (등기)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 2 장 주 식

제8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 주로 한다.<개정 2015. 6.16>

제9조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개정 2015. 6.16>

제10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는 1억6천9백6십만2천8백주로 한다.<개정 2015. 6.16>

제11조 (주식의 종류)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개정 2015. 6.16>

제12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공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개정 2015. 6.16>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공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개정 2015. 6.16>

⑦ 우선주식의 존립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16>

제13조 (주권의 종류등) ①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개정 2015. 6.16>

② 공사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③ 공사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6.21, 2015. 6.16>

제14조 (신주인수권) ① 공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 6.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사회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5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공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6.16>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공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개정 2015. 6.16>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공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개정 2015. 6.16>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관한 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주주로부터 이사회가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6.16>

제17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주주, 등록질권자 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04.4.22><개정 2015. 6.16>

-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개정 2015. 6.16>
- ② 공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기간 또는 그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이 정지되거나 기준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재변경이 정지된 기간의 전일 또는 기준일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자를 당해 사항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제 3 장 사 채

-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4.14, 2015. 6.16>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16>

-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4.14, 2015. 6.16>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16>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5. 6.16>

제 4 장 주주총회

제2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한다.

제23조 (소집시기 및 소집지) ①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개정 2015. 6.16>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사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제24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②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16>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4.14, 2015. 6.16>

제26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②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16>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공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개정 2015. 6.16>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공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② 공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6.16>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주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6.21, 2015. 6.16>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서 보존하고, 그 사본을 지사 또는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 5 장 임원 · 이사회 · 감사위원회

제34조 (임원)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 <개정 2002.5.7., 2005.5.18., 2015. 6.16, 2019. 6.20>

제35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개정 2009.4.3]

제36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에 임원(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다) 후보자의 추천 및 사장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4., 2015. 6.16>

1.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4인<개정 2015. 6.16>

2.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3인 (정관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6.16><단서개정 2015. 6.16>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원의 선임과 경영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원의 선임과 경영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4.22, 본조개정 2007.4.20]

제37조 (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5.7>

② 공사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되는 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2.5.7., 2015. 6.16>

③ 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5. 6.16>

[본조개정 2007.4.20]

제3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6.16>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7.4.20>

2. 공사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회생 및 파산절차 등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경영실권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3. 4.14, 2007.4.20., 2015. 6.16>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 6.16>

제39조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6.16>

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6.16>

③이사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이사 중에서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제40조 (임원의 보고의무) 임원은 공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5.7., 2015. 6.16>

제41조 (비상임이사의 성실의무) 비상임이사는 회기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책임) ① 임원이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5. 6.16>

② 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임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개정 2015. 6.16>

③ 제1항의 결의에 참가한 임원으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5. 6.16>

제43조 (임원의 해임 등) 공사 임원의 해임·해임건의·해임요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 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4.20., 2015. 6.16>

[본조 신설 2005.5.18]

제44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본조 신설 2014.4.2]

제4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2002. 6.21> <단서 삭제 2005. 5.18><개정 2015. 6.16>

② 이사회는 공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개정 2015. 6.16>

③ 이사회 의장은 제52조의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8., 2015. 6.16>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0.3.8>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그 회일의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02.5.7>

제46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에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권한·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47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개정 2009.4.3., 2015. 6.16>

3. 위원회의 대표는 비상임이사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상근감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으며, 상근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사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단서개정 2015. 6.16>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 6.16>

2.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개정 2015. 6.16>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8.12.04]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② 감사위원회는 임원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③ 감사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8.12.04]

제49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4.14, 2015. 6.16>

③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및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3.4.14>

제50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개정 2002.5.7., 2015. 6.16>

제51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 내에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회는 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0.4.6., 2015. 6.16>

② 상임이사회는 이 공사업무의 중요사항중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00.4.6., 2015. 6.16>

③ 상임이사회는 결의된 사항을 비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4.6>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각 비상임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결의한다. <신설 2000.4.6>

⑤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9조 및 제50조는 상임이사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4.6., 2015. 6.16>

제52조 (선임비상임이사) 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개정 2015. 6.16>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전과 그 밖에 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5. 6.16>

[본조신설 2007.4.20]

제53조 (위원회등) ① 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보증심사, 보증이행 등 주요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② 공사는 정관 및 제규정등을 제·개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하여 정부·주택건설사업자 및 공사 등의 실무대표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개정 2002.5.7., 2007.4.20., 2015. 6.16>

② 임원의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신설 2008.4.8>
<개정 2015. 6.16>

③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개정 2002.5.7., 2015. 6.16>

[본조개정 2008.4.8]

제55조 (고문 및 자문위원) 공사는 이사회 결의로 2인이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제56조

[본조신설 2008.12.04.][본조삭제 2020. 4. 1]

제5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16]

제 6 장 업 무

제58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

한다.<개정 2015. 6.1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신설 2015. 6.16>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신설 2015. 6.16> <개정 2017. 4. 5>
3. <개정 2015. 6.16> <삭제 2017. 4. 5>
 - 가. <삭제 2017. 4. 5>
 - 나. <삭제 2017. 4. 5>
 - 다. <신설 2005.5.18><삭제 2017. 4. 5>
 - 라. <신설 2008.4.8.><삭제 2017. 4. 5>
 - 마. <신설 2015. 6.16><삭제 2017. 4. 5>
 - 바. <신설 2015. 6.16><삭제 2017. 4. 5>
 - 사. <신설 2008.12.4><삭제 2017. 4. 5>
 - 아. <신설 2008.12.4><삭제 2017. 4. 5>
 - 자. <신설 2010.7.30><삭제 2017. 4. 5>
 - 차. <신설 2012.1.4.><개정 2015. 6.16><삭제 2017. 4. 5>
 - 카. <신설 2012.4.12><삭제 2017. 4. 5>
 - 타. <신설 2012.9.9><삭제 2017. 4. 5>
 - 파. <신설 2013.4.3.> <삭제 2017. 4. 5>
 - 하. <신설 2013.4.3><삭제 2017. 4. 5>
 - 거. <신설 2013.4.3><삭제 2017. 4. 5>
 - 너. <신설 2013.4.3><삭제 2017. 4. 5>
 - 더. <신설 2013.4.3><삭제 2017. 4. 5>
 - 러. <신설 2013.4.3.><삭제 2017. 4. 5>
 - 머. <신설 2015. 6.16><삭제 2017. 4. 5>
 - 버. <신설 2015. 6.16><삭제 2017. 4. 5>
 - 서. <신설 2015. 4.20><삭제 2017. 4. 5>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증<신설 2003.4.14.><개정 2015. 6.16>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개정 2015. 6.16>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증업무로서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보증
 - 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본호신설 2015. 6.16]

7. 제6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5. 6.16>

8.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신설 2015. 6.16>

9.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신설 2015. 6.16>

11. 공사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본호신설 2015. 6.16]

12.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련되는 해외사업<신설 2015. 6.16>

13.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공사에 부여된 업무<신설 2007.4.20.><개정 2015. 6.16>

14. 기타

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중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대출한 융자금의 기한연장에 한한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행한 보증의 기한연장(대출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대환을 포함한다) 및 보증이행

다. 조합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에 관한 사업

라. 공사의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개정 2015. 6.16>

마. 제1호 내지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신설 2003.4.14.><개정 2006.3.24., 2008.12. 4, 2015. 6.16>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6.16>

- ③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5. 6.16>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6.21, 2015. 6.16>

제59조 (보증의 한도) ①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총액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6, 2001.3.31, 2002.6.21., 2012.4.12., 2015. 6.16><단서신설 2015. 6.16>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의 총액한도를 정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1.3.31> <개정 2009.4.3., 2015. 6.><단서개정 2015. 6.16>

③ 보증종류별 및 피보증인별 보증한도는 제1항의 총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공사는 제58조제1항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 보증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61조 (보증료등) ① 공사는 공사업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료 및 융자금이자 등의 이용대가를 징수한다.<개정 2015. 6.16>

② 공사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6.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율, 융자금이자율, 징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율 및 융자금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3., 2015. 6.16>

제62조 (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② 공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한다.<신설 2015. 6.16>

제63조 (규정의 제정) 공사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중 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6.16>

제 7 장 회 계

제64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 6.16>

제65조 (예·결산 보고 등) ①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반영한 결산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사의 경영건전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12]

제6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7., 2015. 6.16>

1. 재무상태표 <개정 2012.1.4>

2. 포괄손익계산서 <개정 2012.1.4>

3. 주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개정 2012.9.9>

4. 자본변동표<신설 2008.4.8>

5. 현금흐름표

6. 연결재무제표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회의 2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7>

③ 사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제6호의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④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

게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사 또는 출장소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⑤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기존 제65조에서 이기 2018. 9.12]

제67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2.9.9., 2015. 6.16>

1. 이월손실금의 보전<개정 2015. 6.16>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5. <삭제 2015. 6.16>
6. <삭제 2015. 6.16>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12.9.9.>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기존 제66조에서 이기 2018. 9.12]

제68조 (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16>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의 매입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매입
4. 그 밖에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

[기존 제67조에서 이기 2018. 9.12]

[본조개정 2018.12.28.]

제6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이사회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공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이익배당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4.22.>

[기존 제68조에서 이기 2018. 9.12]

제70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공사에 귀속한다.<개정 2015. 6.16>

[기존 제69조에서 이기 2018. 9.12]

제71조 (경영공시) ① 공사는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및 예산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기존 제70조에서 이기 2018. 9.12]

제7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매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기존 제71조에서 이기 2018. 9.1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회사로 전환하여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 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한 사항은 그 결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회사의 설립일 현재 시행중인 조합의 규정은 이를 회사의 규정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규정중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저촉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사장은 이 회사의 설립후 1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회사의 설립당시 조합의 이사장, 이사(전무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는 각각 회사의 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②이 회사의 설립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중 제34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비상임이사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출자금 납입일 현재 출자금액이 많은 상위 2개 금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5조 (보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이 행한 보증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 (최초 주주총회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이 회사의 설립후 최초의 주주총회시에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는 이 정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로 한다.

제7조 (사업년도) ①회사는 조합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에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②회사의 제7기 사업년도는 1999년도중 조합으로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2000. 4. 6>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1>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3조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4조 제5항, 제44조의 2, 제46조,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이 개정되어 감사위원회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③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는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이 개정되어 감사위원회제도가 시행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되며, 임기만료시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부 칙<2002. 6. 21>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14>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13조의 2, 제34조제1항, 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3의 규정은 주택법 제80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 내지 제13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이 공포된 날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5. 18>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4>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임원에 대한 적용) ①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시행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선임당시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4. 8>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당시 상근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 집행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회사 “집행이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이사는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행임원으로 본다.

부 칙<2009. 4.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임원에 대한 적용)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3.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 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책임에 관한 적용특례) 제40조(이사의 책임)는 제51조(사업) 제1항 제4의3호에 해당하는 업무 중 주택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회사가 회사채유동화증권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 1. 5>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2>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9>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3>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 4>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20>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및 그 임직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그 임직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 명의를 이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규정은 이를 공사의 규정으로 본다.

⑤ 이 정관 제34조(임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이 정관 제47조 등의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부 칙<2017. 4. 5>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12>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인가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개정 법(2019.1.1.시행) 제28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9. 6.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책임에 관한 적용특례) 제42조(임원의 책임)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및 제58조(업무)제1항제13호에 의한 공사의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중 정부가 2019년 4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매입업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0. 4. 1>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